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00호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5 5 4 호	재개발 정비사업 정보공개 공고	3
○ 공 고 제 5 7 9 호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7
○ 공 고 제 5 8 0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8
○ 공 고 제 5 8 8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9
○ 공 고 제 6 2 7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1
○ 공 고 제 6 3 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3호선, 소로1-5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13
○ 공 고 제 6 3 3 호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5
○ 공 고 제 6 3 4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9 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4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0 호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1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1 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2 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3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3 호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4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4 호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96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5 호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07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6 호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18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7 호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29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8 호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41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9 호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58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0 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69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1 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80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2 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9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3 호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4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4 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17

고 시

○ 고	시 제 4 4 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남동 노인복지관)사업 실시계획 고시	 229
○ 고	시 제 4 5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31
○ 고	시 제 4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233
○ 고	시 제 4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236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554호

재개발 정비사업 정보공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의 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화해야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공고기간 : 2021. 3. 25. ~ 2021. 12. 31.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
4. 붙 임 : 정비사업 정보공개서(간석성락아파트구역) 1부
정비사업 정보공개서(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1부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백운주택1구역) 1부
5. 기타문의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2/8393)

[별지 제5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구역 면적	20,682.90㎡	구역 지정일자	2006.08.01.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일자	2009.07.17.	조합원수	249
사업시행인가일자	2011.07.22.	사업시행변경일자	2020.06.05.
사업시행자	명칭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김명숙)	
	사무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99번길 29, 3층(주안동) (전화: 032-421-4881)	

2. 사업계획 개요

대지면적	16,512.30㎡	연면적	66,128.23㎡
건 폐 율	20.07%	용적률	249.86%
세대수	469세대 (분양 445세대 / 임대 24세대)		
평형 및 세대수	39A㎡형 24세대, 46㎡형 32세대, 59A㎡형 118세대, 59B㎡형 122세대, 74A㎡형 41세대, 74B㎡형 60세대, 84A㎡형 23세대, 84B㎡형 24세대, 84C㎡형 25세대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 백만원)

시공자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금호건설(주)	2009.09.26.	63,177	2010-01-26	63,177	2013.01.01. ~ 2015.04.30.
	1차 변경	한신공영(주)	2018.05.26.	83,923	2018-06-26	83,923	2020.04.01. ~ 2022.12.31.
	2차 변경	한신공영(주)	-	-	2020-09-09	88,118	2021.12.01. ~ 2024.08.30.
계약변경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2018.06.26.	83,923		시공자 변경		
		2020.09.09.	88,118		관리처분을 위한 본 계약 협상		
		-	-		-		
계약내용		구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건축공사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설비, 가스, 소방공사 포함				
		철거공사	철거, 잔재처리, 석면조사, 석면해체공사 포함				
		기반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공사	예술장식품, 안전관리, 조합원 발코니 확장 등 포함				
		이주비지원	조합원 담보대출방식(시공사에서 이주비 지원 없음)				
		기타 주요계약내용	사업경비는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이 직접 조달 공사대금 상환조건은 연체료, 이자, 공사비, 사업비 원금 순으로 상환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2021-02-10	3차변경	-
	1차변경	-	4차변경	-
	2차변경	-	5차변경	-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현재까지 발생이자 없음	-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남동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16번지 일원		
구역 면적	55,707.90 m ²	구역 지정일자	2009.12.14.
용도지역·지구	공동주택 (아파트)		
조합설립인가일자	2010.05.17.	조합원수	608명
사업시행인가일자	2017.12.11.	사업시행변경일자	2020.12.28.
사업시행자	명칭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	
	사무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76번길 24, 2층(전화:032-469-4639)	

2. 사업계획 개요

대지면적	42,756.8m ²	연면적	153,383.8508m ²
건 폐 율	16.81%	용적률	236.51%
세대수	1,115 세대 (분양 1,055 임대 60)		
평형 및 세대수	38m ² 형 60세대, 74m ² 형 134세대,	59A m ² 형 344세대, 84A m ² 형 129세대,	59B m ² 형 365세대, 84B m ² 형 83세대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 백만원)

시공자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주)한화건설	2010.7.17	180,988	2010.10.05.	180,988	착공일~30개월
	1차변경	(주)한화건설			2018.11.30.	204,800	착공일~34개월
	2차변경						~
계약변경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2018.11.30	204,800		착공지연, 물가상승, 건축법규 변경 등 설계변경		
계약내용		구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건축공사	변경계약금액(2,048억원)에 포함				
		철거공사	변경계약금액(2,048억원)에 포함				
		기반시설공사	공원 및 도로공사는 조합 별도 발주 예정				
		기타공사	변경계약금액(2,048억원)에 포함				
		이주비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의거 조달				
		기타 주요계약내용	사업경비 293억한도 무이자대여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대금 으로 상환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2019. 02. 15.	3차변경	
	1차변경	2020. 08. 21.	4차변경	
	2차변경		5차변경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사업비대출금	2,528		우리은행/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비차입
	이주비대출금	1,638		우리은행으로부터 이주비차입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구역 면적	32,366.50㎡	구역 지정일자	2007.09.28.
용도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일자	2010.09.28.	조합원수	210
사업시행인가일자	2017.12.20.	사업시행변경일자	2020.10.21.
사업시행자	명칭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정낙인)	
	사무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70-1, 3층(주안동) (전화: 032-424-8717)	

2. 사업계획 개요

대지면적	24,854.20㎡	연면적	101,553.00㎡
건 폐 율	18.26%	용적률	249.85%
세대수	746세대 (분양 706세대 / 임대 40세대)		
평형 및 세대수	39.96㎡형 40세대, 59.97㎡형 489세대, 59.88㎡형 135세대, 84.93㎡형 82세대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 백만원)

시공자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주)현대건설	2011.10.29.	3,000	2017.04.27.	122,444	착공일로부터 31개월
	1차변경	(주)현대건설	-	-	2019.02.14.	132,950	착공일로부터 31개월
계약변경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2019.02.14	132,950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연면적 증가		
		-	-		-		
계약내용		구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건축공사	토목, 전기, 설비, 조경공사 등				
		철거공사	지장물 철거				
		기반시설공사	제외(타 업체)				
		기타공사	-				
		이주비지원	조합에서 집행함				
		기타 주요계약내용	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2019.06.11	3차변경	-
	1차변경	-	4차변경	-
	2차변경	-	5차변경	-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이주비	1,947(21년 2월 기준)		계약일자
	사업비	510(21년 2월 기준)		계약일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남동구청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579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 사 실
2.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3.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지정보과
4.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과
5.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과
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 무 과
7.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과
8.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과
9.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재생과
10.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재하수과
11.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식품위생과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 통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580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 국외여행업)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대표자 주소 또는 사무소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21. 3. 17.(수) ~ 2021. 4. 1.(목)(15일간)
3. 행정처분 내용

상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유*투어 여행사	일반여행업	이*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 ***(간석동)	휴업폐업신고 미이행	등록취소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5.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6.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6층 문화관광과(만수동, 남동구청)
 - 담 당 자 : 박호형(☎032-453-2143, FAX: 032-453-2139)

2021년 3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588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1.3.18. ~ 2021.4.1.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01마8101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 서	등록일자	저당가액/ 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0-00612	01마8101	크레도스II	국*관	8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77길 **-4,*층(**동)	저당	쌍용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1127-2004-002570	2004.10.04	4,300,0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627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3.24. ~ 2021.4.7.
3. 공 고 대 상 : 26도 2958 외 4대
4. 공 고 내 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지 않음에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 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1-00024	26도2958	인피니티FX35	남동구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128동 B2주차장	L** *****G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24*번길 *1-1*, *0*호(**동)	2021.2.252 021.3.18	이사불명 폐문부재	2021.2.9.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2	2021-00030	05버8898	포르쉐카이엔에 스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19 구월프라움아트 지하1층	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울**로 3**, *0*호(**동, 아*****실*)	2021.2.242 021.3.17	배달완료 폐문부재	2021.2.19.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032	05라4608	쏘나타(SONATA)	남동구 소래역로 93 넉마을신영지웰아파트 지하주차장2층 B2-C 187	박*** 외1(정*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8길 6, *7/* 3층동 (**동)	2021.2.262 021.3.16	수취인불 명 수취인불 명	2021.2.15.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032-814-4400	
4	2021-00033	63고8963	스펙트라	남동구 논현동46번길 22 코아루오피스텔 B동 지하2층	다*****생**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1* *층(**동, 대***자)	2021.2.25. 2021.3.16	수취인불 명 수취인불 명	2021.2.15.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032-814-4400	
5	2021-00045	02거5989	렉스턴	남동구 능허대로 681 앞 주차구획선	권*임	충청남도 보령시 **면 신**길 **6-*0	2021.3.2.20 21.3.16	이사불명 이사불명	2021.2.22.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6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3호선,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3호선 외 1개 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453-2723),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로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고잔동 소로2-3호선: L=225.1m, B=8.0m, A=2,269.8㎡

○ 고잔동 소로1-5호선: L=141.5m, B=10.0m, A=1,717.9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0.06.18. ~ 2025.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용 지 조 서 (소로2-3호선)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동	156-4	대	473	217.49	255.51	이**	인천 남동구 고잔동 *** **	
2	논현동	156-5	대	378	99.09	278.91	박**	인천 남동구 고잔동 *** **	
3	고잔동	155-11	대	152	99.81	52.19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4	고잔동	155-12	대	358	12.02	345.98	박** 외 2인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 **	
5	고잔동	155-19	도	166	29.72	136.68	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 **	
6	고잔동	155-18	대	147	105.76	41.24	이**	논현동 *** **	
7	고잔동	155-17	대	268	159.75	108.25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8	고잔동	155-14	대	502	153.04	348.96	성**	인천 남동구 포구로*** **	
9	고잔동	155-16	대	106	54.32	51.68	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	
10	고잔동	155-30	임	210	56.80	153.20	박**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11	고잔동	155-28	장	1384	98.03	1285.57	(주)바**	고잔동 *** **	
12	고잔동	155-39	임	305	38.58	266.42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13	고잔동	155-29	도	798	798.00	0.00	남동구	-	
							박** 외4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	
14	고잔동	155-31	장	515	10.68	504.32	박**	경기도 동두천시 이담로 *** **	
15	고잔동	738-8	장	2798	10.75	2787.05	주식회사대*****	인천 남동구 고잔동 *** **	
16	고잔동	155-38	임	190	85.40	104.70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	
17	고잔동	189-8	임	176	20.18	155.82	주식회사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	
18	고잔동	155-23	장	794	6.43	787.07	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19	고잔동	186-8	도	316	116.81	199.19	남동구	-	
20	고잔동	188-2	도	289	17.01	271.99	국(건설부)	-	

제1600호

남동구 구보

2021. 3. 25. 목요일

21	고잔동	189-2	도	66	27.43	38.57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22	고잔동	188-1	도	1,916	50.24	1865.66	남동구	-	
23	고잔동	189-1	장	602	2.49	599.51	신**	시흥시 월곶동 *** **	
합		계		12,908.3	2,269.8	10,367.6			

용 지 조 서 (소로1-5호선)(변경)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잔동	159-2	도	3271	250.95	3020.25	남동구	-	남동구	-	기정
1-1	고잔동	159-2	도	3003.1		3003.1	남동구		남동구		변경
1-2	고잔동	159-6	도	268.1	268.1		남동구		남동구		변경
2	고잔동	159-1	전	18	4.97	13.03	남동구	-	남동구	-	
3	고잔동	161-3	장	2470	3.49	2466.51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			
4	고잔동	160-4	장	17	17	0.00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			
5	고잔동	159	전	551	25.18	525.82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6	고잔동	160-1	장	567	9.95	557.05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7	고잔동	160-3	대	174	173.22	0.78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			기정
7-1	고잔동	160-3	대	4.3		4.3					변경
7-2	고잔동	160-6	대	169.7	169.7						변경
8	고잔동	586-63	도	3,145	43.44	3101.66	국(건설부)	-	국(건설부)	-	기정
8-1	고잔동	586-63	도로	153.3		153.3					변경
8-2	고잔동	586-72	도로	39.4	39.4						변경

용 지 조 서 (소로1-5호선)(변경)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3	고잔동	586-73	도로	2952.4		2952.4					변경
9	고잔동	157-2	전	32	32.00	0.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10	고잔동	157	장	955	4.98	950.02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11	고잔동	156-9	대	163	153.85	9.35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주식회사신**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	기정
									현**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국 서대문***		
11-1	고잔동	156-9	대	11.6		11.6					변경
11-2	고잔동	156-10	대	151.6	151.6						변경
12	고잔동	156-3	주	1211	19.43	1191.07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	주식회사신**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	
									현**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국 서대문***		
13	고잔동	155-8	대	902	474.21	427.79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			기정
13-1	고잔동	155-8	대	318.7		318.7					변경
13-2	고잔동	155-43	대	304.9	304.9						변경
13-3	고잔동	155-44	대	278.4		278.4					변경
14	고잔동	155-35	대	277	55.32	221.68	디**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용 지 조 서 (소로1-5호선)(변경)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5	고잔동	155-9	대	214	15.57	197.93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주식회사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16	고잔동	155-37	대	200	200.00	0.00	이**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주식회사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17	고잔동	155	전	1,722	3.63	1718.37	디**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18	고잔동	155-34	전	41	41.00	0.00	디**주식사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19	고잔동	155-5	대	205	27.56	177.44	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기정
19-1	고잔동	155-5	대	186.6		186.6					변경
19-2	고잔동	155-42	대	18.4	18.4						변경
20	고잔동	155-4	대	1088.6	162.14	926.46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길 *** **	주식회사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기정
20-1	고잔동	155-4	대	927.1		927.1					변경
20-2	고잔동	155-40	대	147.4	147.4						변경
20-3	고잔동	155-41	대	14.1		14.1					변경
합 계				17,223.1	1,717.9	15,505.2					

지 장 물 조 서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동	155-35	계단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	고잔동	155-35	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3	고잔동	157-2	컨테이너	백** 외 2인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3 ***	
4	고잔동	159	컨테이너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5	고잔동	155-8	간이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6	고잔동	155-8	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7	고잔동	155-8	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8	고잔동	155-8	간이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9	고잔동	155-18	건물	이**	논현동 ***	
10	고잔동	155-17	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1	고잔동	155-17	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2	고잔동	155-16	건물	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4-13 삼산타운 610-1201	
		155-30	건물	박** 외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4-13 삼산타운 610-1201	
		155-14	건물	손**	***	
13	고잔동	155-14	건물	손**	***	
		155-29	건물	남동구	-	
		155-39	건물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14	고잔동	155-2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5	고잔동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155-38	간이건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16	고잔동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189-6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55-38	간이건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586-63	간이건물	국(건설부)	-	
		189-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7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55-10	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8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9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0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1	고잔동	156-5	건물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55-11	건물	홍**	인천광역시 연수구 ***	
22	고잔동	155-11	건물	홍**	인천광역시 연수구 ***	
23	고잔동	155-18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4	고잔동	189-6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586-63	간이건물	국(건설부)	-	

제1600호

남동구 구보

2021. 3. 25. 목요일

		189-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25	고잔동	189-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26	고잔동	189-1	간이건물	신**	시흥시 월곶동 1016번지 ***	
		189-2	간이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한 전 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16.1	우	-	한국전력	(1-5호선)
2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62.5	좌	8716F531	한국전력	(1-5호선)
3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06.8	우	8716F731	한국전력	(2-3호선)
4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37.5	좌	8716F822	한국전력	(2-3호선)
5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62.0	우	8716F721	한국전력	(2-3호선)
6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88.2	우	8716F711	한국전력	(2-3호선)
7	인천 남동구 고잔동	0+221.3	좌	8716F712	한국전력	(2-3호선)

통 신 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38.0	우			(1-5호선)
2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12.7	우			(2-3호선)
3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59.4	우			(2-3호선)
4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79.9	우			(2-3호선)
5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96.6	우			(2-3호선)

제1600호

남동구 구보

2021. 3. 25. 목요일

6	인천 남동구 고잔동	0+218.6	우			(2-3호선)
7	인천 남동구 고잔동	0+220.9	좌			(2-3호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633호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실비기준 현실화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안 제5조)
- 봉사활동 실비지급 기준 삭제 : (안 제18조) 및 (안 별표5)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03,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실비기준 현실화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안 제5조)
- 봉사활동 실비지급 기준 삭제 : (안 제18조) 및 (안 별표5)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제3호”를 “제3호까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필요</u> <u>한 사항을 규정함</u> ----- -----.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생략)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 가능하며, 제2항제1호부터 <u>제3호</u> 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두 차례만 연임</u> ----- ---- <u>제3호까지</u> ----- ----- -----.
제18조(봉사활동 실비지급) ① 조 <u>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u> <u>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u> <u>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u> <u>은 [별표5]와 같다.</u> ② <u>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u> <u>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u> <u>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u> <u>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u> <u>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u> <u>다.</u>	<삭 제>

[참고자료]

□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6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26. ~ 2021. 4. 9.(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이*만	인천82바**9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5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오	인천83바**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오	인천83바**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화	인천81바**7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실	인천81바**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춘공원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선	인천84바**8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88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구	인천84바**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선	인천84바**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90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만	인천84바**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현	인천84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수	인천84바**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68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철	인천81바**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주식회사 영구 *****	인천80자**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주식회사 영구 *****	인천80자**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19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소송결과 제출 및 비밀유지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9
----------	------

발의년월일 : 2021년 월 일
발 의 자 : 조성민 · 최재현의원
찬 성 자 : 황규진 의원 외 1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소송결과 제출 및 비밀유지 사항(안 제7조,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
 -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 의사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소송목적의 값(소가)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	무소가사건 및 2천만원 미만	800,000원	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1,000,000원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1,500,000원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0,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00,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원	
	5억원 이상	4,500,000원	
상 소 심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환송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원	없 음
	다수관련사건	3,000,000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5,000,000원	
기 타 소송비용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증인여비 5. 기타비용	실 비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 등

[별표 2]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선임변호사가 구의회 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교체된 경우에는 사건수행의 정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한다.
3. 소가는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7.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분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분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민사·행정 소송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형사소송	검 사		-	
		피고인		변 호 인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소송비용지원)에 따른 남동구의회 의원의 소송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채 의 용 (인)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됨.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참고자료]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본회의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회사무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경기도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경기도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2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800,000 1,000,000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 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감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5. 그 밖의 실비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2,500,000 3,000,000 4,000,000		
	3. 상고심 및 환송심	원심의 1/2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000,000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5,000,000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		1. 출장여비 :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2. 그 밖의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

소송비용 및 자문료 지급기준 (제7조, 제8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소송목적의 값(소가)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	무소가사건 및 2천만원 미만	800,000원	1. 전부 승소시 : 착수 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1,000,000원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1,500,000원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0,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00,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원	
5억원 이상	4,500,000원		
상 소 심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환송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원	없 음
	다수관련사건	3,000,000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5,000,000원	
기 타 소송비용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증인여비 5. 기타비용	실 비	

[비고]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고문변호사가 구 또는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교체된 경우에는 사건수행의 정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3. 소가는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0호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안 제4조, 제5조)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의 중지(안 제6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김안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7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김 안 나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관내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안 제4조, 제5조)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의 중지(안 제6조,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

다.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사업장 주소를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이 공고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

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제4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 <2020. 11. 19. >

제7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기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1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 적용대상(안 제3조)
- 지원활동 및 지원내용(안 제4조 ~ 제7조)
-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 등(안 제8조, 제9조)
- 유공자 표창(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6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관내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 적용대상(안 제3조)
- 지원활동 및 지원내용(안 제4조~제7조)
-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 등(안 제8조, 제9조)
- 유공자 표창(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지원활동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
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
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 8. 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17. 11. 2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7. 7. 26.,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7. 11.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2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절차(안 제4조 ~ 제7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안 제8조,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허위신고 시 조치사항(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5
----------	------

발의년월일 : 2021년 월 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절차(안 제4조~제7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안 제8조~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허위신고 시 조치사항(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

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조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 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3호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보조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
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최재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7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찬 성 자 : 이유경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보조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90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2. ‘보조건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건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건의 지원 등’ 및 제90조 ‘과태료’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의무) 구청장은 보조건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액 : 1,100천원
 - 홍보물 제작비용 3,000매 600,000원
 - 그림문자(픽토그램) 제작비용 2,000매 500,000원

예산 지급액 1,100천원으로 조례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2020. 12. 29.>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 12. 29.>

3의3. 삭제 <2015. 12. 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1. 26.,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장애인 보조건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건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건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건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건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건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건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건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건에 사용 중인 보조건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건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4호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8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김안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1항에서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참고자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

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5호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9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관내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4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보호자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추가 발달 검사(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은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기 시행중에 있어 세출 순증가분은 해당사항이 없음.(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호자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은 소요 예산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보호자 심리지원 서비스 연간 소요 예산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인원수	-	29	31	33	35
소요액 계	-	20,300	21,700	23,100	24,500
심리 검사비	-	5,800	6,200	6,600	7,000
심리 치료비	-	14,500	15,500	16,500	17,500

- 1) 대상 인원수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아동수(58명)의 50% 인원에서 매년 5% 증가 산정
- 2) 1인당 검사비(정서) 20만원, 치료비(5만원, 10회 기준) 50만원 산정

작성자 :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6호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구민건강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0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조성민·유광희·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 제안이유

-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구민건강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4조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춤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나 가족 등 심폐소생기술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

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5. 남동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7조(홍보)의2항
 -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 할 수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교육수료자 홍보물품(1인당) : 1,800원×1,000명=1,800천원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 문 경

[참고자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걱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7호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사용으로
열에도 타지 않고 자연분해 기간이 500년 이상 소요되므로 재활용을
통해 아이스팩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
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
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1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유광희·이정순·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사용으로 열에도 타지 않고 자연분해 기간이 500년 이상 소요되므로 재활용을 통해 아이스팩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남동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수거 운반비: 차량, 인력(수집·운반 등)
- 재 생 비: 세척·소독·건조·포장 등
- 폐기물처리비: 재생 후 남은 폐기물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사용 비용 : 수거운반, 세척, 선별, 포장비용 등
: 200원/개(300g) 환경부 기준
- 월 약22만개(세대당 월1개 배출시)×5%(재사용 추정치)×200원
=2,200천원(연26,400천원)
- 폐기물 처리비: 톤/270,000원
- 재사용(월11,000개) 후 잔량 * 20.12.기준 3,250개 소요, 향후 재사용 확대
월 약62.7톤(209,000개×300g)×270,000원=16,929천원(연203,148천원)

나. 추계 결과

- 연 소요비용 월19,129천원×12월=229,54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환경부의 'SAP아이스팩'에 대한 환경 부담금(313원/kg)을 22년 출고량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20.8입법예고)에 있어, 국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율이 19년(19%), 20년(51%)급속히 늘고, 22년(99%)거의 전량 친환경 소재 아이스팩으로 제조, 유통, 사용 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23년 이후 소요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계
세 입							
세 출		229,548	114,774	57,387	-	-	401,70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229,548	114,774	57,387	-	-	401,709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8호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2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김안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2조의2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남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할 것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
-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발생을 사업장(공사장)에서 저감하기 위한 실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권고적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의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참고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본조신설 2009. 6. 9.]

③ 삭제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확성기	옥 외 설 치			
가. 주거지역, 녹지 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 광 · 휴 양 개 발 진흥지구, 자연환 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 는 학교·종합병 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 외 설 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확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성기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삭제 <2019. 12. 31.>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 간 대 별	주 간 (06:00 ~ 22:00)	심 야 (22:00 ~ 06:00)
대상 지역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65 이하	60 이하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 1. 26., 2007. 5. 17., 2007. 5. 25., 2009. 6. 9., 2012. 2. 1., 2013. 6. 4., 2013. 7. 16.,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2.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21. 1. 1.] 제5호마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1) 3. 제1차 금속제조업	2) 가. 금속주조업 3) 나. 제철 및 제강업 4)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5)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6) 가. 화학비료제조업 7) 나. 배합사료제조업 8)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11) 5. 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13)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14)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15) 7. 운송장비제조업	16)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17)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18)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19)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20) 가. 발전업 21)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22)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23)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24) 수상화물취급업	
25)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26) 가. 금속처리업 27)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28)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29)	30) 비고 31)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32)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3)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29호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3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조성민·유광희 의원

찬 성 자 : 황규진 의원 외 1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환경정비”란 빈집 내에 무단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비 대상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비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 요청
2. 빈집의 관리를 위하여 그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출입구 등 폐쇄 요청
3. 빈집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방역 등 주기적 실시
4.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요청
5. 빈집 환경정비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집 환경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빈집 정비 또는 빈집 환경정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요인

- 빈집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 조성(쉼터 조성 등)

☐ 관련조문

-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5조(지원 대상)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 순증가가 없어 비용추계 불필요(조례안 발의 전부터 시행 중)

※ 21년 빈집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 조성 예산 : 5,000만원(2,500만원*2개소)

작성자 : 도시건설국 건축과장 김동욱

[참고자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0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8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

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1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절차(안 제4조 ~ 제7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안 제8조,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허위신고 시 조치사항(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5
----------	------

발의년월일 : 2021년 월 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절차(안 제4조~제7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안 제8조~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허위신고 시 조치사항(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

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 제10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용역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은 남동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조례로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감 사 실 장 유 재 필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조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 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2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 적용대상(안 제3조)
- 지원활동 및 지원내용(안 제4조 ~ 제7조)
-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 등(안 제8조, 제9조)
- 유공자 표창(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6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반 미 선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관내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 적용대상(안 제3조)
- 지원활동 및 지원내용(안 제4조~제7조)
-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 등(안 제8조, 제9조)
- 유공자 표창(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지원활동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4조(지원활동 등),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며 기존 사업집행 시 여성기업에 가산점을 부여 하고 있고 자금지원 시에도 우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박 광 철

[참고자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 8. 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17. 11. 2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7. 7. 26.,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7. 11.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3호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안 제4조, 제5조)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의 중지(안 제6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김안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7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김 안 나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관내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안 제4조, 제5조)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의 중지(안 제6조,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사업장 주소를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정하

여 구청장이 공고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 관련조문 : (안) 제5조제2항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남동구 소상공인 120명
- 지급시기 : 매년
- 비 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120	24	24	24	24	24
비용(백만원)	500	100	100	100	100	100

※ 보증한도 : 출연금의 12배 범위(매년 1억원 출연시 12억원 범위로,
소상공인 5천만원씩 특례보증 시 매년 24명 지원)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세부내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120	24	24	24	24	24
사업비 (백만원)	합계	500	100	100	100	100
	시비					
	구비	500	100	100	100	1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박 광 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

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제4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 <2020. 11. 19. >

제7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

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기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4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3. 24.(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8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

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유 재 구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4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남동 노인복지관)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남동 노인복지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공영개발과 ☎032-453-568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명칭: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3. 사업규모

- A=8,58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공영개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계				11,792	8,589			
1	수산동	7	답	1,393	1,384	남동구		
2	수산동	7-6	제	645	10	인천광역시		
3	수산동	7-8	도	843	843	인천광역시		
4	수산동	13-1	전	3,326	3,326	남동구		
5	수산동	13-2	전	950	950	남동구		
6	수산동	13-5	도	89	89	인천광역시		
7	수산동	13-6	답	76	76	이○○		
8	수산동	13-7	도	384	384	국 (기획재정부)		
9	수산동	13-9	도	40	20	국 (국토교통부)		
10	수산동	13-33	답	7	7	인천광역시		
11	수산동	13-34	도	19	18	국 (국토교통부)		
12	수산동	13-43	도	3,234	696	인천광역시		
13	수산동	14-1	전	575	575	남동구		
14	수산동	14-2	도	211	211	국 (기획재정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45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작성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종합건설본부(건축1팀 ☎032-440-5260),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칭: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3. 사업규모(변경)

- A=169,85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6.08.22. ~ 2021.03.31.
- 변경: 2016.08.22. ~ 2022.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변경 없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16 (수산동) 외 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4 (논현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9-2, 5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16 (수산동)	2009.11.16.	덕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1.3.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덕골로 1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6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6-1, 476-8, 476-9, 47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10 (고잔동)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54번길 53-1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10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6-8, 476-1, 476-9, 47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8 (고잔동)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54번길 53-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8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7-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19 (구월동)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40번길 1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5-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80번길 28 (간석동)	2009.11.16.	석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80번길 2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8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3-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54번길 55 (도림동)	2009.11.16.	수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골로54번길 5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5를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5번길 18-10 (장수동)	2009.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5번길 18-1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8-10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14 (논현동)	2021.3.18.	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건물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4 (논현동)	2021.3.18.	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건물 말소	쌍둥이네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6 (논현동)	2021.3.18.	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건물 말소	충북회양념매운탕전문점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10 (고잔동)	2021.3.1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12 (고잔동)	2021.3.1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8 (고잔동)	2021.3.1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80번길 26 (간석동)	2021.3.1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80번길 28 (간석동)	2021.3.1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4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588 (구월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59 (고잔동)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59 (고잔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6 (논현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8 (논현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31번길 18-15 (구월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31번길 18-11 (구월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21-14 (간석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38번길 15 (고잔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55 (도림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90번길 9 (구월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73번길 16-1 (만수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5-18 (간석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75번길 11 (운연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 (구월동)	2021.3.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80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588 (구월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1.3.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58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88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6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31번길 22 (간석동)	2009.11.16.	벽돌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벽돌말로31번길 2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69-265 (논현동)	2009.11.16.	소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3.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154번길 69-26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9-265를 건물번호로 부여	